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419
----------	------

제출일자 : 2023. 12. 6.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의 소송수행 변호사 선정·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 권고안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를 이행하여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당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 변경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나. 위촉 시 공개모집 및 관련기관 추천 방식 도입, 퇴직공직자 위촉 제한 규정 마련(안 제2조제2항, 제3항)

다. 전문성 및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한 직무 편중 방지 규정 신설(안 제3조제3항)

라. 고문변호사 운영, 소송수행 현황에 관한 세부 정보 공개(안 제8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48조, 제50조 (※ 붙임)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없음

다. 기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 (2) 입법예고(2023. 10. 27. ~ 11. 16.) 결과 : 의견 없음
-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법률고문변호사”를 “고문변호사”로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 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대구광역시 달성군 법률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과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u>법률고문변호사</u>를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위촉 등) ① (생략)</p> <p><u><신 설></u></p> <p><u><신 설></u></p> <p><u><제2항에서 이동></u></p> <p><u><제3항에서 이동></u></p> <p>제3조(직무) ① ~ ② (생략)</p>	<p><u>대구광역시 달성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u></p> <p>제1조 ----- ----- -----<u>고문 변호사</u>----- -----.</p> <p>제2조(위촉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회·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p> <p>③ 군에서 근무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이내에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p> <p>④ <u>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⑤ <u>고문변호사가 법률고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u></p> <p>제3조(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p>

<신 설>

③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위하여 고문 변호사의 전문성, 유사사건 수행 경험, 관할법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촉한 고문변호사 간에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소송수행 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7조(제도개선의 권고 및 의견의 표명)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제48조(의견제출 기회의 부여) ① 권익위원회는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하기 전에 그 행정기관등과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관계 행정기관등의 직원·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은 권익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50조(처리결과의 통보 등) ① 제46조 또는 제47조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그 권고 또는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권고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권익위원회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권익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